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학교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학생들에게 마약중독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안 제22조의 4 제1항)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

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안 제22조의 4 제3항)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에는 학년별 주요 교육내용,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 교원 연수계획 등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7. 28. ~ 9. 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주요 교육내용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4(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이하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급별 주요 교육내용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540